

1. 개정이유 및 주요 내용

인사혁신처에 평가대상 조직으로 설치한 인사혁신국 적극행정과의 평가기간을 그 동안의 평가결과에 따라 2025년 9월 30일에서 2026년 9월 30일까지로 1년 연장하고, 인사혁신국 통합인사정책과의 명칭을 균형인사과로 변경하려는 것임

2. 참고사항

가. 관계법령 : 생략

나. 예산조치 : 별도조치 필요 없음

다. 합의 : 행정안전부 등과 합의되었음

라. 기타 : 신·구조문대비표, 별첨

총리령 제 호

인사혁신처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

인사혁신처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제9조제2항 중 “통합인사정책과”를 “균형인사과”로 하고, 같은 조 제7항
각 호 외의 부분 중 “통합인사정책과장”을 “균형인사과장”으로 한다.
별표 5 3)의 평가기간란 중 “2025년 9월 30일”을 “2026년 9월 30일”로 한
다.

부 칙

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신 · 구조문대비표

현 행	개 정 안
제9조(인사혁신국) ① (생 략)	제9조(인사혁신국) ① (현행과 같 음)
② 인사혁신국에 인사혁신기획 과 · 적극행정과 · 심사임용과 · 개방교류과 및 <u>통합인사정책과</u> 를 두며, 각 과장은 부이사관 · 과학기술서기관 또는 서기관으 로 보한다.	② ----- ----- ----- <u>균형인사과</u> ----- ----- ----- -----.
③ ~ ⑥ (생 략)	③ ~ ⑥ (현행과 같음)
⑦ <u>통합인사정책과</u> 장은 다음 사 항을 분장한다.	⑦ <u>균형인사과</u> 장----- -----.
1. ~ 7. (생 략)	1. ~ 7. (현행과 같음)

[별표 5]

인사혁신처와 그 소속기관에 두는 평가대상 조직(제20조 관련)

조직	정원	평가기간
1) 삭제<2025.2.25.>		
2) 삭제<2025.2.25.>		
3) 인사혁신국 적극행정과	3명 (5급 1명, 6급 1명, 7급 1명)	<u>2026년 9월 30일까지</u>
4) 윤리복무국 재산심사관리과	6명 (4급 1명, 5급 3명, 6급 1명, 7급 1명)	2026년 12월 31일까지